

제301회 임시회
2011. 6. 23.(목)

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

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김재종 의원의 6인

(김재종, 김영주, 박문희, 정 현, 김동환, 이광희, 장병학)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1년 6월 15일
- 회부일자 : 2011년 6월 17일

3. 제안이유

-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,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 기관에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후 의회 보고하던 단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교육·학예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“도지사”를 “교육감”으로 본다를 신설(안 제1조의2)
- 폐지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의회 보고 단서 조항 삭제(안 제5조제1항제3호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5. 검토의견

- 김재중의원님이 대표발의한 「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에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 사무는 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현행대로 두어도 문제는 없지만,
- 안 제1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“도지사”를 “교육감”으로 본다는 간주 조항을 두면,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되며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,
- 또한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2010년7월1일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안 제5조제1항제3호 중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와의 관계) 이 조례에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교육·학예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“도지사”를 “교육감”으로 본다.

제2조제1항 중 “의회는”을 “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”로 하고, “감사를”을 “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를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조사를”을 “행정사무조사(이하 “조사”라 한다)를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라 한다)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21조에 따라”로 하며,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제14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46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77조의3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43조제4항에 따라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를 “도지사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9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제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6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20조의”를 “제2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의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후단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후단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단서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단서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기타의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제1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6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제17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7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
행	정
	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와 행정사무조사(이하 “조사”라 한다)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(신 설)</p>	<p>제1조의2(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와의 관계) 이 조례에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“도지사”를 “교육감”으로 본다.</p>
<p>제2조(감사) ① <u>의회</u>는 도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2조(감사) ① <u>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</u>는-----<u>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</u>를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조사)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<u>조사</u>를 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	<p>제3조(조사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행정사무조사(이하 “조사”라 한다)</u>를-----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, 사업소</p>	<p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<u>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</u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3. <u>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. 다만,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의회에의 보고로 같음하되,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.</u></p>	<p>3. <u>법 제121조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 <u><단서 삭제></u></p>
<p>4. <u>충청북도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</u></p>	<p>4. ----- <u>제146조에 따른</u>-----</p>
<p>5. <u>법 제104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(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)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.</u></p>	<p>5. ----- <u>제3항에 따라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6. <u>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·지방공단외의 출자·출연법인중 충청북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.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충청북도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, 회계,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.</u></p>	<p>6. ----- <u>제77조의3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 <u>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부과 징수한다.</u></p>	<p>제1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 ----- ----- <u>제43조제4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<u>도지사가</u>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 ① ~ ② (생략) ③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·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) ① ~ ② (생략)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2조(국가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 방법 등)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는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.</p> <p>② 법 제4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국가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 방법 등) ① 제6조에 따른----- ----- ---제2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의-----</p> <p>② 법 제41조제3항 후단에 따라----- ----- -----</p>
<p>제13조(대리출석 답변의 통지) 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·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전까지 의장이나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13조(대리출석 답변의 통지) ----- ----- 제42조제2항 단서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4조(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)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·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(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)----- ----- ----- -----그 밖의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6조(제척과 회피) ① (생략)</p> <p>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<u>당해</u>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<u>당해</u>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16조(제척과 회피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9조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도 또는 해당기관은 <u>제2항의</u>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19조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----- <u>제2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0조(징계)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<u>제16조의</u>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, <u>제17조의</u>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</p>	<p>제20조(징계)----- ----- <u>제16조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<u>제17조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회와 시·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,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.

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4항과 제5항의 선서·증언·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충청북도 <개정 97.11.28>
2.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, 사업소 <개정 2003.8.29, 2008.1.1>
3.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,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하되,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97.11.28, 2008.1.1>
4. 충청북도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<개정 94.10.14, 2008.1.1>
5.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(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)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. <개정 2008.1.1>
6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·지방공단외의 출자·출연법인 중 충청북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충청북도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, 회계,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. <신설 94.10.14>

② 삭제 <2004.12.31>

제1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신설 2004.12.31, 2008.1.1.>

② 제1항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사실통보 등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부과 징수한다.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